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671호)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779호)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787호)
- 송갑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854호)
- 김용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928호)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237호)
- 김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398호)
- 태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399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471호)
- 정우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485호)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442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463호)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560호)
- 김용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668호)
- 조오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678호)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691호)
- 하영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707호)

2022.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이헌승의원안]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김은혜의원안]	7
I. 제안경위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
III. 검토의견	8
[김영배의원안]	14
I. 제안경위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4
III. 검토의견	16

[송갑석의원안]	24
Ⅰ. 제안경위	2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4
Ⅲ. 검토의견	25
 [김용판의원안(Ⅰ)]	30
Ⅰ. 제안경위	30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0
Ⅲ. 검토의견	31
 [정점식의원안(Ⅰ)]	37
Ⅰ. 제안경위	37
Ⅱ. 제안이유	37
Ⅲ. 주요내용	38
Ⅳ. 검토의견	39
 [김철민의원안]	51
Ⅰ. 제안경위	51
Ⅱ. 제안이유	51

Ⅲ. 주요내용	52
Ⅳ. 검토의견	53
 [태영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Ⅰ)], [정우택의원안]	62
Ⅰ. 제안경위	62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3
Ⅲ. 검토의견	66
 [이해식의원안], [서영교의원안(Ⅱ)]	80
Ⅰ. 제안경위	80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0
Ⅲ. 검토의견	83
 [정점식의원안(Ⅱ)]	93
Ⅰ. 제안경위	9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3
Ⅲ. 검토의견	94

[김용판의원안(Ⅱ)]	99
Ⅰ. 제안경위	99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9
Ⅲ. 검토의견	100
 [조오섭의원안]	105
Ⅰ. 제안경위	10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5
Ⅲ. 검토의견	106
 [김주영의원안]	111
Ⅰ. 제안경위	11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1
Ⅲ. 검토의견	112
 [하영제의원안]	120
Ⅰ. 제안경위	120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0
Ⅲ. 검토의견	121

[이헌승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헌승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2. 2. 4.
3. 회부연월일 : 2022.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 중 일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음.

그런데 사찰림이나 전통사찰보존지는 면적이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다른 종교 시설과 비교할 때 재산세 부담이 매우 큼.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유희토지가 많은 만큼 다른 종교시설과는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찰림이나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제50조제5항 단서 삭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찰림·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삭제하여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단서 삭제).

[illegible]

현행법 제50조제5항에서는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되(본문),¹⁾²⁾

1) 사찰림이란, 승려의 수행과 신도 교화 등을 목적으로 건립·축조된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사찰 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의미함(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11. 선고 2004구합87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참조)

①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②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③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단서).

개정안은 수익사업·유료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단서)을 삭제함으로써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포괄적인 감면을 통해 사찰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사찰들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사찰림 및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감면 예외 사유 삭제에 대해서는 ①다른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및 ②2017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통사찰 관련 재산세 감면의 범위가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발전·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 라.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다소 넓어진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먼저 다른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하면,

개정안과 같이 감면의 예외 사유를 삭제할 경우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를 수익사업에 이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종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재산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현행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수익사업·유료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³⁾, 종교단체 이외의 다른 감면 규정 역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이는 결국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기타 단체·문화재 등에 비하여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를 특별히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견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⁵⁾

3)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5)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조세의 형평성

[참고]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실적

(단위: 천원)

연도	감면건수	감면세액
2018	619	892,453
2019	529	992,918
2020	660	1,030,746

※자료: 연도별 지방세통계연감 기반으로 작성

다음으로, 2017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사 과정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내지(境內地)”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된 점(2012.2., 법률 제11317호)을 감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감면 대상을 “사찰림 및 경내지”에서 “사찰림 및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였음.

“경내지”는 경내 건조물이 정착된 토지 등을 의미하였던 것에 비해 “전통사찰보존지”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된 토지 등을 의미하여 그 개념에 경내가 아닌 토지도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사찰과 분리된 곳에 위치한 사찰 소유의 주차장이나 사찰 주변의 경작지 등 사찰 외부의 일부 토지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감면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통사찰법 개정에 따른 범위 비교]

법률 제8348호(개정 이전)	법률 제11317호(개정 이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 <u>경내지</u> (境內地)"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생략) 3. " <u>전통사찰보존지</u> "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시행령 제2조(경내지 등의 범위) 1. <u>경내 건조물</u>[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4. <u>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u>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u>경내 건조물</u>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가. <u>사찰 소유의 건조물</u>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u>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u>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u>사찰 소유의 건조물</u>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은 공익성 및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타 감면대상은 모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중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김은혜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은혜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2. 2. 16.
3. 회부연월일 : 2022. 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주로 승차권 판매 수입으로 운영되어 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수입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런 이유로 최근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교통권마저 크게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 경영을 위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기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현행법 제70조에서는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1항), 천연가스 버스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항),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4

항)을 그 내용으로 함.⁶⁾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외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⁷⁾ 경영을 위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여객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가 감소하였고,

6)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② 삭제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37조(면허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다면 여객터미널사업자의 세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여객터미널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⁸⁾

[연도별 터미널 이용객 수 및 위탁 판매 수수료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객 수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2017년	72,998,636	61,957,044
2018년	73,245,622	61,610,433
2019년	74,659,570	64,940,348
2020년	43,323,835	39,681,841

※자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되는 “대중교통시설”⁹⁾로서,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 및 시외접근권과 관련하여 공공성을 띄고 있음. 경영악화 등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폐업하는 경우,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며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와 관련하여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①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지역의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은 더욱 심화될 것임. 따라서 주민들의 지역 간 및 지역 내의 이동을 촉진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능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지방세법령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면서 토지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¹⁰⁾

10)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각 목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각 목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마. 생략)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토지의 분류에 따른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0~5,000만	0.2%	0.2%	0.2%
5,000만~1억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2억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2억~10억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자료: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바탕으로 작성.

*: 분리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0.07%),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4%) 제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 0.2%~0.5%)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한계세율 0.2%~0.4%)에 비해 재산세가 저율(0.2%)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이따른 토지에 비해 재산세 부담을 경감받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¹¹⁾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 피해액 보전의 목적은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도 달성할 수 있을

1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 완화 등으로 여객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일몰기한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세 감면의 필요성이 없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를 종합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경영 안정 도모 필요성과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성, 이미 저율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점 및 별도의 재정지원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몰기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는 2023년 272억원, 2025년 294억원 등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총 849억원(연평균 2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¹²⁾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 사업자 간 규모·여건 등이 상이하여 조례를 통한 지원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개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회답일:2022.3.22.)

[김영배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2. 2. 18.
3. 회부연월일 : 2022. 2.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령상 종교단체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연혁을 보면 전통사찰 등 종교단체가 보유한 농지·임야 등 토지에 대해 1995년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1995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는 보유토지의 기능과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가 저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하고 1996년 이후에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의 기능과 유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음.

한편,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별도합산 토지와 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전통사찰 등이 1995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일지라도 수익사업에 제공될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에서 제외토록 개정하여 그 대상토지는 재산세 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되었고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가 되었음.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와 농지 등은 대부분 전통사찰과 함께 탄생된 것으로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체였음. 더욱이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 등은 원래 수도승의 수도공간이었으나, 출가하는 승려가 부족하게 되었고 사찰의 공양물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근 농가에 경작을 부탁한 토지가 대부분임. 이러한 종교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농지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재산세를 합산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금의 과도한 종교간섭으로 전통사찰 등의 종교활동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임.

이에 전통사찰 등이 1995년 이전에 취득한 임야·농지이더라도 전통사찰의 존립과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2021년 이전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단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찰림·전통사찰보존지로서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 생산과 관련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단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 ④ (생략)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u>.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임야와 농지 등을 제외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에-----</u>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0조제5항에서는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전통사찰보존지¹³⁾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되(본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단서).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사업·유료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됨.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을 ①종합합산과세대상, ②별도합산과세대상, ③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¹⁴⁾

1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1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 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 다. (생략)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저율 과세¹⁵⁾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제외 혜택이 부여됨.¹⁶⁾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¹⁷⁾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하고 있음.

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비영리사업자(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포함)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으나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728호)에 따라 비영리사업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 아. (생략)

15) 분리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0.07%),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4%)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0.2% 세율로 과세됨.

(종합합산과세대상: 0.2%~0.5%, 별도합산과세대상: 0.2%~0.4%)

16)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됨.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7)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종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자의 범위를 학교·외국교육기관·평생교육단체로 한정하되(시행령 제102조제8항제1호),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전통사찰보존지가 분리과세대상에 추가되었음(시행령 제102조제8항제11호). 이로 인하여 전통사찰이 소유한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가 변경되었음.¹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통사찰 관련 분리과세대상 비교]

대통령령 제30704호(개정 전)	대통령령 제30728호(개정 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 10. (생략) <u><신설></u>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현행과 같음)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 10. (생략)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5.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18) 현행 시행령에서는 단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만을 제외하고 있음. 「지방세법 시행령」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전통사찰 관련 토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재산세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종교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¹⁹⁾

다만, 개정안과 같이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축소하여 규정하게 되는 경우, 다른 종교단체 및 향교 등과의 감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⁰⁾ 현행법 제50조제2항²¹⁾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면

19)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준용하도록 하고, 이 때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면제됨.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20)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조세의 형평성

21)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서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및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중 사찰립과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만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개정안이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 생산과 관련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설정하려는 취지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보다는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전통사찰의 존립과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2021년 이전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취지임을 밝히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임야와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임.

재산세가 면제됨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종교단체 및 향교에 대한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문리적으로만 보면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지가 아닌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여전히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

이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법률 체계를 고려할 때 해당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전통사찰 관련 토지를 다시금 분리과세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조치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²²⁾

아울러,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에 사찰의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 또는 공양물 생산을 위한 토지 등을 함께 포함시키려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362호)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22) 참고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 당시,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연도별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하는 특례를 두었는데, 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토지의 구분 변경에 따른 세제 부담의 증가가 없었고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됨.

대통령령 제3072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과세연도	비율
2020년, 2021년	100/100
2022년	80/100
2023년	60/100
2024년	40/100
2025년	20/100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은 공익성과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전통사찰의 운영 및 공양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감면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송갑석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갑석의원 등 22인
2. 발의연월일 : 2022. 3. 3.
3. 회부연월일 : 2022.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 및 지방세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에 대한 세법상의 과세체계는 국민이 주거사다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세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통상적인 국민의 주거 형성과정을 보면 무주택이거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거사다리이고 현행 세법도 여기에 맞게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국민의 주거사다리 형성 과정에서 국민에게 전혀 귀책이 없는 사유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어긋날 경우 이것을 보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이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권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그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임(안 제92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건설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취득할 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의 주택 건설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산업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취득</u>

	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	------------------------------

현행법에서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등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자동차·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 연면적 또는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²³⁾

개정안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건설기간 중 천재지변, 산업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취득할 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경우 아파트 철거 및 재시공에 70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초 예상에 비

23)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 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 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해 사업기간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분양권 소유자로서는 예정된 준공 시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주 시기를 예측하여 해당 사업 기간 동안의 주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로 주거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시행기간이 장기화되어 해당 기간 내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준공 지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현행법 제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은 천재지변 등으로 기존의 과세물건이 멸실·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비해 개정안에서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는 준공 지연은 분양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가 늦어지는 것으로 그 성질을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준공 지연 시의 거주에 관해서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법 이외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수분양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세부담능력이 더욱 큰 사람에 대해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준공 지연으로 인한 대체주택 취득 시의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의 필요성과 준공 지연의 성질, 조세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나아가, 취득세 면제 규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개정안에서는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준공 지연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 준공 완료 이후 대체주택의 매각 여부와 무관히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면제 혜택이 다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즉, 개정안의 감면요건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준공이 지연된 주택 외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분양이 지연되는 주택의 가격에 비해 가액이 월등히 큰 고급주택 등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며, 준공 완료 후 대체주택이 필요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대체주택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임.

현행법 제92조에서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대체취득한 과세물건의 가액이 종전 과세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의 범위는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취득세 감면 규정

을 도입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분양권은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간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권리로서 건설 지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등에 의한 보상이 바람직하다는 점,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수분양자에 대한 감면 시 그러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수분양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김용판의원안(Ⅰ)]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판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2. 3. 23.
3. 회부연월일 : 2022. 3. 2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고 자산 및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	② ----- ----- -----

2024년 12월 31일

③ -----

 2024
년 12월 31일. -----

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 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 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 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 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 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 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2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⑤ ----- ----- ----- ----- ----- ----- ----- -----2024년 12월 31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업²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회복지법인등”
이라 함)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와 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사
업소분 및 종업원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2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허. (생 략)

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회복지법인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센병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됨.²⁵⁾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을 통해 사회복지 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등기 및 사회복지사업시설에 대한 설립등기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주민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경우, 2023년 312억원, 2024년 323.2억원 등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지방세 수는 2년간 총 635.1억원(연평균 317.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²⁶⁾

참고로, 202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사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²⁷⁾이 논의되었는데, 당시 사회복지법인등 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2022년도에 감면 대상 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음.²⁸⁾

이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2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사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에 관한 4건의 계류 안건들과 병합하여 심의하여 연장 여부 및 일몰기한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6) 개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참조

27) [210371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210794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211047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211149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5인)

28)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021.11.30.)

[계류 중인 유사 취지 법률안과의 비교]

구분		현행	김도읍 의원안	김영배 의원안	이종성(I·II) 의원안	김용환 의원안(I)
감면 대상	사회복지 법인	全 사회복지시설	(현행과 같음)			
	비영리 법인 단체	일부 시설*	장애인복지 시설(추가)	全 시설	장애인복지 시설(추가)	(현행과 같음)
감면내용		취득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현행과 같음)			
최소납부세제** 적용 여부		적용	(현행과 같음)	배제	배제	(현행과 같음)
일몰기한		~2022년	(현행과 같음)	폐지	~2025년	~2024년

*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센병요양시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인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정 절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원칙에 근거한 타당성 검토 후 감면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정점식의원안(Ⅰ)]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2. 4. 13.
3. 회부연월일 : 2022. 4. 14.

Ⅱ.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약 103만 6,000가구로 2015년 대비 4.8%(약 5만 3,00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인구는 약 231만 7,000명으로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인구 대비 5%대 선이 붕괴된 4.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농가 인구의 연령 대도 50대 이상이 7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인구 고령화 가 심각한 상황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후계농어업인이 감소하는 것은 후계농어업의 육성·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점이 한 요인이므로,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또는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의 주체인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범위를 기존의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 및 제9조).

나. 자경농민 중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안 제6조).

다. 자영어민 중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함(안 제9조).

라. 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30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어업 관련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보물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취득세 및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 <u>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u> 」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u>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 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략)

③ · ④ (생략)

-----100

1. 분의 50(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
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

1. 2. (현행과 같음)

② -----

-----100분의 50(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
인-----

-----100
 분의 50(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
 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

를」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u>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 ----- ----- ----- ----- ----- ----- -----100분의 5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u>100분의 6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u>-----.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자경농민”이라 함),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자경어민”이라 함)이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조합·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를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②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담보물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며, ③담보물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업 또는 어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총 영농·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후계농어업인”으로 정의하고,²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

2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⁰⁾³¹⁾

[후계농어업인등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비교]

구 분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법		후계청년농어업인법 §2	후계청년농어업인법 §8
요 건		① 후계농어업인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 사가 있는 <u>50세미만</u> 의 경력 10년 미만인 자	① 후계농어업경영인 후계농어업인등 중 선정
		② 청년농어업인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창업·취업 의사가 있는 <u>40세미만</u> 의 자	②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하여 따로 선정
지 원	현행	지원X	취득세·등록면허세 ³²⁾ 50% 감면
	개정	취득세·등록면허세 60% 감면	

즉, 현재는 후계농어업인 중 후계농업경영인등·후계어업경영인등으
로 선정된 사람³³⁾이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후계농

3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1) 이하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인등’,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통칭함

32) 이 때의 등록면허세는 제10조제1항의 담보물에 관한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를 의미함

33) 1981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 제도가 추진되어 왔음. 1981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후계농업경영인으로는 총 154,731명이 선정되었고,

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 선발 여부와 관계 없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세제 혜택을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농어업의 계승·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³⁴⁾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나³⁵⁾ 어업권·양식업권·어선을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어업인후계자로는 25,072명이 선정되었음(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및 해양수산부 “연도별 수산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 지원현황” 참고)

34) 「지방세특례제한법」 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선적지 및 어장·양식장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데,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에 포함되지 않는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이라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것도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 시행 시, 일몰기한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년간 총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권·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군·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33.3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³⁶⁾

다음으로 ③담보물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농민·어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21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사 시의 논의 경과 및 금융기관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담보물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어업인이 농협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으려는 경우 등기비용 등이 농어업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에 최초 도입된 제도로, 당시 100% 감면이었으나 2013년도에 75%, 2018년 50%로 점진적으로 특례가 축소되어 옴.³⁷⁾

36) 개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참조

37) 농어업인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으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이하 생략)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정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경에 관해 2021년 12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감면율을 유지한 채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9건의 의원발의안과 감면율을 25%로 축소하면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정부안이 함께 논의되었는데, 심사 결과 감면율을 5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을 1년만 우선 연장한 후 올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경에 관한 2021년도 심사 경과]

	개정 전	개 정 안					심사 결과
		정점식 의원안	김형동·최춘식·권명호·이원택·이해식 의원안	김민철 의원안	홍문표·이달곤 의원안	정부안	
일몰 기한	~2021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4년	~2022년
감면율	50%	50%(개정 전과 같음)					50%

당시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³⁸⁾을 계기로 금융기관이 용자 담보물을 등기하는 경우의 비용은 금융기관이 전부 부담하도록 변경되어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8)서울고법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인지세와 담보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종전 표준약관을 각 비용마다 은행과 고객 중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한 다음, 은행들에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한 사안에서, 은행대출 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악용의 가능성 등과 함께 개정 전 표준약관의 내용과 그 적용 실태, 약관 개정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개정 전 표준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조항임을 이유로 한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

이후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9614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된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음.

기존의 농어업인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던 관행이 차단된 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으로서 가급적이면 감면 특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인 점을 고려하여 세제 지원을 축소하려고 하였음.³⁹⁾

이에 대해 세제 지원이 축소되는 경우 농협 등의 입장에서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상품의 이익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금리를 현재보다 인상하는 등 농어업인에게 그 부담을 우회적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감면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고, 우선 1년만 일몰기한을 연장한 후 올해 심사시 재논의하기로 한 것임.

이를 고려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1995년 제도 신설 이후 감면율이 축소되어 온 점,⁴⁰⁾ 등록면허세 감면율 축소 시 비용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조세부담능력,⁴¹⁾ 비용이 우회적으로 농어업인에게 전가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으로도 감면 지원 중인 점, 실제 경영 여부가 아닌 경영 의사만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2820호)에서 정부는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50%에서 25%로 축소하면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였음.

40) 1995년 100%로 도입 후, 2013년 75%로, 2018년 50%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됨.

41) 참고로, 2021년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는 1조 2,972억 4,000만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356억 4,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수수료 성격인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담보물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실적]

(단위:건, 천원)

	제10조제1항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도	감면건수	감면세액
2018	298,292	23,569,039
2019	292,427	23,628,528
2020	369,009	25,236,296

※자료: 연도별 지방세통계연감 기반으로 작성

[김철민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철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2. 4. 26.
3. 회부연월일 : 2022. 4. 27.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주는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다수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관계 악화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정 등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 간 상호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6조).

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8조제4항).

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8조의2).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②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③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illegible]

-----2025년
12월 31일-----.

[illegible]

③

-----202

5년 12월 31일-----.

[illegible]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2. (생략)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

1. -----

-----2025년
12월 31일-----.

2. -----

-----2025년 12월 31일-----
-----.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5년 12
월 31일-----.

1.·2. (현행과 같음)

②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 ----- -----.
1.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u>2025년 12월 31일</u>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2. ----- ----- ----- ---- <u>2025년 12월 31일</u> ----- -----.

현행법에서는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제46조)⁴²⁾,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며(제58조제4항),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42)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는데(제58조의2),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해당 특례들의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
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일몰연장의 대상이 되는 현행 감면 조항 현황]

조문	조항	감면대상	감면내용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1항	대통령령 ⁴³⁾ 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 구소	취득세·재산세 35%
	제2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과밀억제 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35%
	제3항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50%
	제4항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60% 재산세 50%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위 각 항의 감면에 10%p 추가 감면		
제58조 (벤처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37.5%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등 에 대한 감면)	제1항	지식산업센터 설립 사업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7.5%
	제2항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취득세 50% 재산세 37.5%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
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
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
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
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심의회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해당 감면 특례들의 2018년~2020년 기간의 감면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건수 및 감면액은 감소세를, 재산세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건수 및 감면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취득세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건수 및 감면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황(제46조)]

(단위: 천 원)

세목	취득세		재산세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18	363	11,424,115	8,028	5,377,298
2019	360	6,732,012	7,967	5,604,217
2020	281	6,091,053	8,053	5,678,304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황(제58조)]

(단위: 천 원)

세목	취득세		재산세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18	65	1,377,920	638	204,805
2019	75	1,050,337	718	253,118
2020	77	1,304,460	824	270,756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입주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황(제58조의2)]

(단위: 천 원)

세목	취득세		재산세	
연도	감면 건수	감면액	감면 건수	감면액
2018	6,578	81,433,061	34,161	3,676,496
2019	8,689	96,966,056	39,713	4,722,003
2020	9,301	104,132,903	50,047	5,585,533

※자료: 지방세통계연감 바탕으로 작성

연구개발을 통한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촉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해당 감면 특례들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개정안과 같이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감면비율을 현행 1000분의 375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정태호의원안⁴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분양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44) 2022. 6. 10. 발의, 의안번호 2115874,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수는 2023년 1,767.2억원, 2025년 2,232.6억원 등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총 5,984.5억원(연평균 1,994.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⁴⁵⁾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기업 혁신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정 절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원칙에 근거한 타당성 검토 후 감면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5) 세목별로 살펴보면, 연평균 취득세수는 1,802.0억원, 재산세수는 192.9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다만 2021년 12월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중인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 감면 규모는 증가할 수 있음(개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참조)

[태영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I)], [정우택의원안]

I . 제안경위

1. 태영호의원안

가. 발 의 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2. 4. 26.

다. 회부연월일 : 2022. 4. 27.

2. 서영교의원안(I)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2. 5. 2.

다. 회부연월일 : 2022. 5. 3.

3. 정우택의원안

가. 발 의 자 : 정우택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2. 5. 3.

다. 회부연월일 : 2022.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태영호의원안

현행법에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 당시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억 5천만원까지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배우자 범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는 포함하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등은 배우자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최근 몇 년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 비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취득금액이 낮아 감면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고,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가격을 5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2. 서영교의원안(I)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무주택자의 주거마련비용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

현행법은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시가가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시가가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 1,411억원이고, 수도권은 7억 5,762만원을 기록했음.

이처럼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그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들과 비교해 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도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음.

예컨대, 2021년도에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특례경감세율을 적용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실제거래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였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현 시세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 7억원)으로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가액 및 경감 기준 가액을 각각 4억원 이하와 4억원 초과로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제1항).

3. 정우택의원안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로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여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제외되어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요건으로 규정된 취득가액 기준 또는 소득 기준 등을 완화하려는 내용 등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의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illegible]

택을 말한다.	-----	-----	다른 주택 및
이하 이 조에	-----	-----	「주택법」 제
서 같다)을 소	-----	-----	2조제4호에 따
유한 사실이	-----	-----	른 준주택 중
없는 경우로서	-----	-----	주거 목적으로
합산소득이 7	-----	합산소득이 1	사용되는 오피
천만원 이하인	-----	억 5천만원 이	스텔을 말한
경우에는 그	-----	하-----	다. 이하 이
세대에 속하는	-----	-----	조에서 같다)
자가 「지방세	-----	-----	을-----
법」 제10조의	-----	-----	-----
3에 따른 취득	-----	-----	-----
당시의 가액	-----	-----	-----
(이하 이 조에	-----	-----	-----
서 “취득 당시	-----	-----	-----
의 가액”이라	-----	-----	-----
한다)이 3억원	-----5억원	-----6억원	-----6억원
(「수도권정비	(「수도권정비	(「수도권정비	-----
계획법」 제2	계획법」 제2	계획법」 제2	-----
조제1호에 따	조제1호에 따	조제1호에 따	-----
른 수도권은 4	른 수도권은 6	른 수도권은 7	-----7
억원으로 한	억원-----	억원으로 한	억원-----
다) 이하인 주	-----	다)-----	-----
택을 유상거래	-----	-----	-----
(부담부증여는	-----	-----	-----
제 외 한 다)로	-----	-----	-----
취득하는 경우	-----	-----	-----
에는 다음 각	-----	-----	-----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 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이 경우 「지 방세법」 제13 조의2의 세율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 우는 제외한다.	----- ----- ----- -----면제 한다. <단서 삭제>	----- -----지방세를- ----- ----- ----- ----- ----- ----- ----- ----- ----- -----.	----- -----2025년 1 2월 31일----- ----- ----- ----- ----- ----- ----- ----- ----- ----- -----.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 하인 경우에 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삭 제>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 득세를 면제 한다.	1. ----- -----3억 원----- ----- ----- ----- -----.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 천 만 원 을	<삭 제>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4억 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 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3억원 -----

<u>초과하는 경</u> <u>우에는 취득</u> <u>세의 100분</u> <u>의 50을 경</u> <u>감한다.</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없 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 획 및 이용 에 관한 법 률」 제6조 에 따른 도 시지역(취득 일 현재 도 시지역을 말 한다)이 아 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 거나 면의	2. ----- ----- ----- ----- ----- ----- ----- ----- ----- ----- -----		

행정구역(수	-----		
도권은 제외	-----		
한다)에 건	-----		
축되어 있는	-----		
주택으로서	-----		
다음 각 목	-----		
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	-----		
는 주택을	-----		
소유한 자가	-----		
그 주택 소	-----		
재지역에 거	-----		
주하다가 다	-----		
른 지역(해	-----		
당 주택 소	-----		
재지역인 특	-----		
별 시·광역	-----		
시·특별자치	-----		
시·특별자치	-----		
도 및 시·군	-----		
이외의 지역	-----		
을 말한다)	-----		
으로 이주한	-----		
경우. 이 경	---. -----		
우 그 주택	-----		
을 <u>감면대상</u>	--- <u>면제대상</u>		
주택 취득일	-----		
전에 처분했	-----		

거나 <u>감면대</u> <u>상</u> 주택 취 득일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로 한정하 다. 가. ~ 다. (생략) 3.·4. (생략) ④ 제1항에 따 라 취득세를 <u>감면받은</u> 사람 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감면</u> <u>된</u>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 략) ⑤·⑥ (생 략)	-----<u>면제대</u> <u>상</u>-----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④ ----- ----- <u>면제받은</u>----- ----- ----- ----- -----<u>면제</u> <u>된</u>----- -----. 1. ~ 3. (현행 과 같음) ⑤·⑥ (현행 과 같음)	
--	---	--

현행법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⁴⁶⁾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취득 당시 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천만원 초과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음.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①취득가액 기준과 관련하여 세 개정안 모두 취득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있는데, 서영교의원안(Ⅰ)·정우택의원안은 이에 맞추어 취득세 면제 또는 50% 감면의 기준이 되는 금액(1억 5천만원)을 상향하고, 태영호의원안은 취득가액의 구분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또한, ②소득 기준과 관련하여 서영교의원안(Ⅰ)은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합산소득이 1억 5천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6)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함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7. (생략)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주택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록 하고 있고, ③일몰기한과 관련하여 서영교의원안(Ⅰ)은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정우택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④감면 대상의 범위에 관해 태영호의원안은 생애최초의 기준이 되는 ‘배우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며, ⑤감면 대상 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우택의원안은 오피스텔을 감면 대상 주택의 범위에 추가하고 있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2022.6.21.) 정부가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발표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금번 발표된 방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요건이 되는 취득가액·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으로⁴⁷⁾ 설정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 누구나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정부는 발표일(6.21.)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겠다는 입장⁴⁸⁾으로 발표된 감면 확대 사항을 발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임.⁴⁹⁾⁵⁰⁾

47) 현행법에 따른 최대 감면한도에 해당함(주택가격 4억원 × 취득세율 1% × 감면율 50% = 200만원)

48)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가 신설된 2020년 당시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된 2020.8.12. 사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후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개정법률의 소급효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통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은바 있음. 따라서 정부안에 따른 경우 2022.6.21. 이후부터 법 개정·시행 사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납부한 세액 혹은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 및 정부발표안의 비교]51)

	현행	태영호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정우택 의원안	22.6.21. 정부 발표안
감면대상 취득가액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5억 이하	수도권 7억원이하 비수도권 6억 이하	수도권 7억 이하 비수도권 6억 이하	취득가액 무관
취득가액 에 따른 감면비율	취득가액 15억 이하 100%, 15억 초과 50%	취득가액 무관 100%	취득가액 4억 이하 100%, 4억 초과 50%	취득가액 3억 이하 100%, 3억 초과 50%	취득가액 무관 100% (상한:200만원)
감면대상 소득기준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현행과 동일)	부부 합산 1억5천만원 이하	(현행과 동일)	소득 무관
일몰기한	~ 23년	(현행과 동일)	일몰기한 삭제	~ 25년 (2년 연장)	(현행과 동일)
기타사항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 관계등 추가 -감면 대상자에 미성년자 추가		-감면 대상에 오 피스텔 추가	-발표일 이후부 터 법 시행 사 이 주택구입시 취득세 환급

먼저 ①취득가액 기준 상향 및 ②소득 기준 상향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들과 같이 감면 대상 취득가액 기준 및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생애최초 주택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최근 주택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추세를 고려할 때 세제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4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참조

50) 참고로, 정부발표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年감면 규모가 현행 1,574억 대비 2,864억 증가하여 약 4,438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함.

5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 주택 취득세율 (취득당시가액 기준)	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더욱이, 현행법 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차례 감면을 받는 등 남용될 우려 역시 다른 감면 규정에 비해 적은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감면 대상 소득액 상향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점, 감면 확대에 따라 지방세입이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기준 완화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⁵²⁾

개정안 시행 시, 태영호의원안에 따라 취득세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1억 5천만원에서 5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2023년 1년간 총 3,111억원의 취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

정우택의원안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취득가액 및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3년 2,273억원, 2025년 3,997억원 등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총 1조 268억원(연평균 3,4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⁵³⁾

52) 2021.12.16. 기준 가구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83.5%에 해당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53) 개정안들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참조(회답일: 태영호의원안 2022.5.16., 정우택의원안 2022.6.17.)

다음으로 ③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일몰기한 삭제(서영교의 원안(I)) 또는 연장(정우택의원안) 시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감면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지방세 특례 부여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종교 단체·향교 및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고는 감면 규정별로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점, 통상 일몰기한을 3년 기간으로 설정해왔으나 2021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사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 등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2년만 연장했던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 삭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④‘배우자’ 범위에 사실혼 관계인 사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태영호의원안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사람은 법률혼 관계는 아니더라도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등⁵⁴⁾ 실생활에서는 법률혼과 유사한 측면도 있으므로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취득세 감면을 위한 요건이 되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

54)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프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 [공1995.4.15.(990),1612])

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 범위가 넓어질수록 생애최초 요건에 해당하기 어려워져 감면 대상이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미성년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태영호의원안은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⁵⁵⁾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보다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성인에 비하여 담세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⑤오피스텔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려는 정우택의원안에 대해서는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가용 자금이 적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55)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 취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과는 과세 체계가 다른 점,⁵⁶⁾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들의 감면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최근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 및 소득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한 점을 고려 하여 대안별 효과 및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6)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10, 6억원 이상~9억원 이하는 1천분의 10~1천분의 30, 9억원 이상 1천분의 30이 되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이 적용됨.

[참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현황(2021년)

□ (규모) 123,354건, 1,574.3억원

○ (수도권) 53,214건(43.1%), 788.7억원, (비수도권) 70,140건(56.9%) 785.6억원

□ (주택 가액별) 전체 건수 중 1.5억원 이하 주택이 30.8%, 1.5~3억원 54.4%, 3~4억원(수도권 한정)은 14.8% 차지

○ 시·도별(건수)로는 경기 > 경남 > 인천 > 서울 > 경북 순으로 높음

구분	계	1.5억원 이하	1.5~3억원	3~4억원
전국	123,354건	37,973건(30.8%)	67,177건 (54.4%)	18,204건(14.8%)
	1,574.3억원	388.5억원(24.7%)	837.9억원 (53.2%)	347.9억원(22.1%)
수도권	53,214건	7,428건(14.0%)	27,582건 (51.8%)	18,204건(34.2%)
	788.7억원	86.9억원(11.0%)	353.9억원 (44.9%)	347.9억원(44.1%)
비수도권	70,140건	30,545건(43.5%)	39,595건 (56.5%)	-
	785.6억원	301.6억원(38.4%)	484.0억원 (61.6%)	-

※ 괄호 안은 비중

□ (면적별) 전체 건수 중 60㎡(25평) 이하 주택이 52.4%, 60~85㎡(34평)가 43.7%, 85㎡ 초과 주택은 3.9%를 차지

계	60㎡ 이하	60~85㎡	85㎡ 초과
123,354건	66,317건(53.8%)	52,377건(42.4%)	4,660건(3.8%)
1,574.3억원	824.5억원(52.4%)	688.6억원(43.7%)	61.2억원(3.9%)

□ (연령별) 전체 건수 중 청년층(2·30대)이 57.7%, 중·장년층(4·50대)가 36.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령층(6·70대)도 일부 수혜(6.2%)

○ 연령대별로는 30대 > 40대 > 20대 > 50대 > 60대 > 70대 순으로 높음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후
123,354건	20,730건 (16.8%)	50,486건 (40.9%)	28,654건 (23.2%)	15,873건 (12.9%)	6,107건 (5.0%)	1,504건 (1.2%)
1,574.3억원	309.4억원 (19.7%)	666.2억원 (42.3%)	343.8억원 (21.8%)	176.6억원 (11.2%)	63.3억원 (4.0%)	15.0억원 (1.0%)

※ 자료: 행정안전부

[이해식의원안], [서영교의원안(Ⅱ)]

I. 제안경위

1. 이해식의원안

가.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2. 4. 28.

다. 회부연월일 : 2022. 4. 29.

2. 서영교의원안(Ⅱ)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2. 4. 29.

다. 회부연월일 : 2022. 5. 2.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해식의원안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이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상승하였고, 그 중에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 세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148조의2 신설).

2. 서영교의원안(Ⅱ)

(1) 제안이유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0년 11월 3일 발표함.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이에 대하여 '20년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하였으며, '21년에는 특례 적용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 첫해인 '21년에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등에 의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5% 상승하는 등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22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상승하는 등 2년 연속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함.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격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전까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2022년도에 한하여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2021년 시가표준액 또는 2022년 시가표준액 중 적은 것을 적용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는 특례 도입(안 제36조의4).

참고사항

1. 이해식의원안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부과 시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거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이해식의원안은 2020년도 가격을, 서영교의원안(Ⅱ)은 2021년도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이해식의원안 제148조의2 신설, 서영교의원안(Ⅱ) 제36조의4 신설).

현행	이해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신설>	제148조의2(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적용특례) 거주자가 2022년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대통령령으	제36조의4(1세대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조에서는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에

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할 경우 2020년도 과세기준일 당시의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2021년도 또는 2022년도의 주택공시가격이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것을 적용한다.

대한 2022년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세표준은 2021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용한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2021년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1.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2022년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2021년 시가표준액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2022년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2. 주택의 신축·증축

		등으로 2021년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2021년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2022년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및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산출된 세액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중 적은 것을 부과한다.
--	--	---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⁵⁷⁾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0.1%~0.4%에 해당하는 한계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는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한정)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을 0.05%p 경감하는 특례가 신설된 바 있음.⁵⁸⁾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

과세표준	세율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초과금액의 0.15%	30,000원+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초과금액의 0.25%	120,000원+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초과금액의 0.4%	420,000원+초과금액의 0.35%

57)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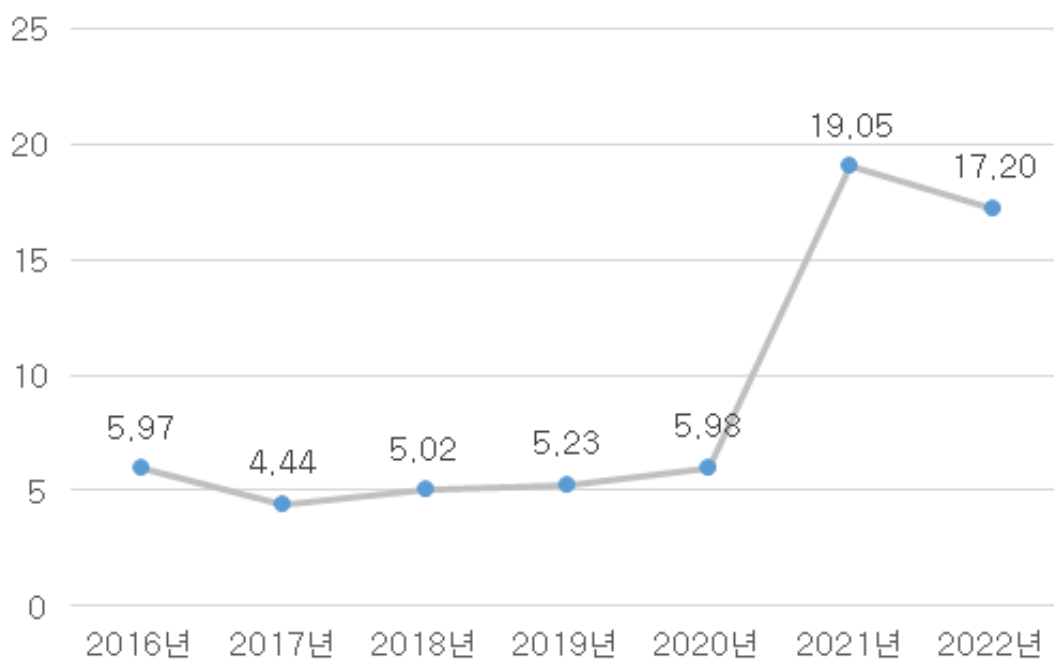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58) 「지방세법」 제111조의2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2020.12.29.)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반영률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일례로 전국 평균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율⁵⁹⁾은 2016년~2020년의 기간에는 약 4%~6% 수준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2021년에는 증가율이 19.05%, 2022년에는 17.20%⁶⁰⁾로 나타난 바 있음.

[연도별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율(전국)]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보도자료 기반으로 작성

59) 2020년도에 공동주택은 총 1,441만 4,244호로 전체 주택 수 1,852만 5,844호 대비 7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자료: 통계청,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거주인수별 주택”).

정부는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4.9% 수준으로 발표함.

60) 2022.3.24. 열람 시 산출된 변동율은 17.22%였으나, 공시가격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시점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음(4.29. 결정 및 공시).

주택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징수된 세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택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국민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재산세 주택분 징수실적]

(단위: 억원)

연도	과세표준	세액
2018년	17,472,623	44,422
2019년	19,212,199	49,898
2020년	21,080,507	56,852
2021년		

※자료: 연도별 「지방세통계연감」 기반으로 작성

이에 개정안들은 ①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산정 시 2022년도 공시가격과 과거(이해식의원안: 2020년, 서영교의원안(Ⅱ): 2021년)의 공시가격 중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서영교의원안(Ⅱ)은 이에 더하여 ②2022년도에 신축·증축 등으로 2021년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2021년도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고(안 제36조의4제1항제2호), ③2022년도 재산

세액이 2021년도의 재산세 납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안 제36조의4제2항).

먼저 ①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과거 공시가격 활용에 관해서는 개정안들과 같이 과거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면 코로나19 등으로 가게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보유로 인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특례 규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과거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개정안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것이 불과 약 1년 반 전인 2020년 11월임을 감안한다면 정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¹⁾

또한, 최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5로 하향 조정하였음.⁶²⁾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한시적 인하로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의 취지가 달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함께 재

61)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6.2.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하며,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객관성·공정성 높인다”)

6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시행 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 2022. 6. 30., 일부개정]

산세 과세표준 특례 조항을 함께 도입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입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과거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해서는 최근 급격한 재산세 증가세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보유세 부담 경감의 필요성, 정부 정책의 안정성,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와 지방세입 감소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⁶³⁾

만약 ①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과거 공시가격 활용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서영교의원안(Ⅱ)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②2021년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 방식 규정 및 ③2022년도 재산세액이 2021년도 재산세 납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둔다면 재산세액 산출에 있어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줄일 수 있는 조치로 보임.

6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및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들의 상정 시점(2022.9.14.)을 기준으로 2022년도 과세표준을 산정 시 과거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지방세법」 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특히 ③2022년도 재산세액이 2021년도 재산세 납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방세법」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세 부담 상한 규정을 고려할 때 도입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지방세법」 제122조에서는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두어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는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산세액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시가격별로 3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대비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110%, 6억원 초과시에는 130%까지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음.⁶⁴⁾

2021년도에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세 부담 상한 이상으로서 세 부담 상한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올해 재산세액 산출 시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세액이 2021년보다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서영교의원안(Ⅱ)과 같이 2022년도 재산세액이 2021년도 납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문 규정을 둔다면 의도하지 않은 세액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

64) 「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특례세율 규정(공시가
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이 마련되
어 있는 점, 최근 공정시장가액배율을 45%로 하향 조정한 점 등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정점식의원안(Ⅱ)]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2. 5. 12.
3. 회부연월일 : 2022. 5. 1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은 농어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와 농어촌인구의 감소·고령화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할 때 해당 세제 지원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영농자금 등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조합·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 ----- ----- -----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 ----- ----- -----.
1. ~ 5. (생략) ②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은행 등의 조합·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음.

개정안은 조합·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감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농민·어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21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사 시의 논의 경과 및 금융기관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담보물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어업인이 농협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으려는 경우 등기비용 등이 농어업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에 최초 도입된 제도로, 당시 100% 감면이었으나 2013년도에 75%, 2018년 50%로 점진적으로 특례가 축소되어 있음.⁶⁵⁾

65) 농어업인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으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경에 관해 2021년 12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감면율을 유지한 채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9건의 의원발의안과 감면율을 25%로 축소하면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정부안이 함께 논의되었는데, 심사 결과 감면율을 5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을 1년만 우선 연장한 후 올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경에 관한 2021년도 심사 경과]

	개정 전	개 정 안					심사 결과
		정점식 의원안	김형동·최춘식· 권명호·이원택· 이해식 의원안	김민철 의원안	홍문표· 이달곤 의원안	정부안	
일몰 기한	~2021년	~2023년 (2년)	~2024년 (3년)	~2025년 (4년)	~2026년 (5년)	~2024년 (3년)	~2022년 (1년)
감면율	50%	50%(개정 전과 같음)					50%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이하 생략)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⁶⁶⁾을 계기로 금융기관이 용자 담보물을 등기하는 경우의 비용은 금융기관이 전부 부담하도록 변경되어 기존의 농어업인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던 관행이 차단된 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으로서 가급적이면 감면 특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인 점을 고려하여 세제 지원을 축소하려고 하였음.⁶⁷⁾

이에 대해 세제 지원이 축소되는 경우 농협 등의 입장에서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상품의 이익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금리를 현재보다 인상하는 등 농어업인에게 그 부담을 우회적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감면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고, 우선 1년만 일몰기한을 연장한 후 올해 심사시 재논의하기로 한 것임.

이를 고려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1995년 제도 신설 이후 감면율이 축소되어 온

66)서울고법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인지세와 담보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종전 표준약관을 각 비용마다 은행과 고객 중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된 다음, 은행들에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한 사안에서, 은행대출 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악용의 가능성 등과 함께 개정 전 표준약관의 내용과 그 적용 실태, 약관 개정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개정 전 표준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조항임을 이유로 한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

이후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9614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된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음.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2820호)에서 정부는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50%에서 25%로 축소하면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였음.

점,⁶⁸⁾ 등록면허세 감면을 축소 시 비용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조세부담능력,⁶⁹⁾ 비용이 우회적으로 농어업인에게 전가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이 농·어업인에게 등기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이 근절되어 취약계층 보호라는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고, 수수료 성격인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담보물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실적]

(단위:건, 천원)

연도	제10조제1항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감면건수	감면세액
2018	298,292	23,569,039
2019	292,427	23,628,528
2020	369,009	25,236,296

※자료: 연도별 지방세통계연감 기반으로 작성

68) 1995년 100%로 도입 후, 2013년 75%로, 2018년 50%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됨.

69) 참고로, 2021년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는 1조 2,972억 4,000만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356억 4,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김용판의원안(Ⅱ)]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2. 5. 19.
3. 회부연월일 : 2022. 5. 20.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 공제하는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66조제3항제3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2. (생략) 3. 2021년 1월 1일부터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생략)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u>2024년 12월 31일</u> ----- ----- ----- -----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6조제3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⁷⁰⁾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⁷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⁷¹⁾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그 일몰기한을 2024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⁷²⁾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간의 감면 기한을 일치시킨다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제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다만, 2021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사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전기·수소전기자동차와 달리 일몰기한을 1년만 연장한 취지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률 증가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제66조제3항(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제66조제4항(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모두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2021년 10월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감면 기한을 1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는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당시 정부는 감면 기한을 차등화한 것에 대하여 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함과 동시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어 납세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를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⁷³⁾의 연장 여부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⁷⁴⁾⁷⁵⁾

73)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74)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안(의안번호:2116603)과 조정식의원안(의안번호 2117208)이 각 2022.7.22., 2022.9.2.발의되어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75)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2022.12.31.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2021년도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2020년도 대비 35.9% 증가한 222,869대 판매되었으며, 전체 판매 대수 대비 비중 역시 2020년도 8.7%에서 12.9%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연료별 내수판매 현황]

구 분 (대, %)	2021년(잠정)		2020년		전년 동기비
		비중		비중	
친환경차	347,738	20.1%	225,089	11.9%	54.5%
하이브리드	222,869	12.9%	163,984	8.7%	35.9%
내연기관차	1,378,045	79.9%	1,660,358	88.1%	△17.0%
전체 합계	1,725,783	100.0%	1,885,447	100.0%	△8.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

2021년도 하이브리드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2월 기준 약 2.8%에서 2021년 12월 기준으로는 약 3.6%까지 증가⁷⁶⁾하였음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을 통한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활성화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측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76) 2020년 12월: 전체 2,436만 5,969대 중 674,461대
2021년 12월: 전체 2,491만 1,101대 중 908,240대

경우, 취득세는 2023년 1,024억, 2024년 1,122억원 등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총 2,146억원(연평균 1,0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⁷⁷⁾

따라서,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대 효과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연장 여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 추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실적⁷⁸⁾

(단위: 천원)

연도	감면건수	감면세액
2018	116,514	149,987,601
2019	128,629	163,869,393
2020	153,817	132,591,232

※자료: 연도별 지방세통계연감 기반으로 작성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한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해당 규정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사항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원칙에 근거한 타당성 검토 후 감면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7) 개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회답일:2022.5.26.)

78) 2020년에는 2019년과 비교할 때 감면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감면 세액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의 상한이 2019년까지는 140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90만원으로 하향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조오섭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오섭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2. 5. 20.
3. 회부연월일 : 2022. 5.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택을 특별분양받아 세제 혜택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주택을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주택을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직원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및 제6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거주 의미 명확화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81조제3항, 제8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u>거주</u> 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③ -----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23년 12월 31일-----.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⑥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법 제81조제3항은 ①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②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과 ③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9.12.31. 이전 소속자 한정)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율은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음.⁷⁹⁾

개정안은 “거주”의 의미를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더욱 명확히하고,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면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근무기관의 이전에 따른 인구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근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정주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제81조에 따라 세제 감면을 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차익만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전공공기관 근무자들 중 실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 감면 혜택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구체성·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⁸⁰⁾

다만,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현행법의 다른 감면 규정과는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감면 규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서 규정된 다른 감면 특례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는 것을 “상시 거주”로 약칭하고 있는데,⁸¹⁾ 개정안에서는 이를 “거주”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지방세 특례 대상·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명확성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 2. (생략)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②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

로 약칭하고 있음. “상시 거주”를 규정한 감면 특례들은 해당 약칭을 해당 조문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거주”로 약칭한다 하더라도 법률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감면 규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야 하겠음.

또한, 개정안은 감면 요건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추징사유를 규정한 현행법 제81조제4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감면 신청인이 “계속하여 거주”하는지 여부를 감면 신청을 접수한 당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는 결국 감면 이후 사후관리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파악한 후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일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81조제4항⁸²⁾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추징사유를 보완하지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택을 매각·증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증여한 경우
 - 가. 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주택의 취득일

않는다면 계속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아울러, 현행법 제81조제3항에서 감면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제81조제4항의 추정사유를 확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추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겠음.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이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는 2023년 1년간 총 15.8억원(연평균 1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⁸³⁾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거주요건 강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한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해당 규정은 올해 일몰이 도래될 사항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원칙에 근거한 타당성 검토 후 감면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추정 조문에서 사후관리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3) 개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참조(회답일:2022.7.4.)

[김주영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2. 5. 23.
3. 회부연월일 : 2022. 5.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특구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해양레저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해양레저특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의5).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7조의5(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해양레저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특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특구의 사업장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1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

한다.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u> <u>⑧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⑨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u> <u>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u>
--	---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690호)에서는 해양레저산업 발전 및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을 “해양레저특구”로 정의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 해양레저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레저특구 관련 개발사업 시행 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음.⁸⁴⁾

84)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양레저특구”란 해양레저산업 발전 및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개정안은 해양레저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해양레저특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양레저특구 입주를 활성화하고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 부여에 앞서 해양레저특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이 필요할 것이므로, 해당 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⁵⁾

또한, 현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⁸⁶⁾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수도

지역을 말한다.

제5조(해양레저특구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 제9조에 따른 해양레저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레저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 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5) 2022. 5. 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8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한정)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고,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 감면해주고 있어 해양레저특구 입주 기업 역시 이에 따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특구마다 세제 지원 제도를 신설하면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김주영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689호)이 의결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⁸⁷⁾

현행법 제167조의2⁸⁸⁾ 및 법률 제12955호(2014. 12. 31.) 부칙 제2

-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87) 2022. 5. 24.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 ③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조⁸⁹⁾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제3장(지방소득세 특례)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689호)에 따라 해양레저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소득세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7조의2의 적용을 받아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공제·감면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취지에 공감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서 2023.12.31.까지 소득세 감면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9)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하영제의원안]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하영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2. 5. 24.
3. 회부연월일 : 2022. 5.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 배기량과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경우 해당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에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4항제5호 신설).

[illegible]

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⑤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5.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29조제4항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⁹⁰⁾에서는 국가유공자 이외에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음.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만,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함)가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는데, ①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 ②승차정원 7~10인 승용자동차, ③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④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⑤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됨.⁹¹⁾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의 취득에 따른 감면 대상에 위에서 나열한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 외에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등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명확하지 않아 현행 규정이 납세자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점, 감면 대상 추가를 통해 국가유공자등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서 국가유공자등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예우 필요성과 이동 편의 증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자동차 취득 시 지방세를 감면하면서도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도 그 감면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열거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에서는 소비자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들이 있는 등⁹²⁾ 고가의 자동차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 범위를 제한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면적으로 감면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도 중형 이하 친환경자동차는 감면 대상이 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별도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2) 테슬라 모델 X, 메르세데스벤츠 EQS350 등

문 의 처
02)6788-5337